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신경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875

발의연월일 : 2013. 9. 16.

발 의 자 : 신경림·안홍준·정문헌
김세연·전하진·주영순
유재중·김정록·류지영
김장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사람의 건강상의 특성 및 건강 위험요인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특성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연령단계별”을 “성별·연령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 ① ----------성별·연령별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